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나7501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나750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19가단1359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임재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변론종결 2022. 10. 18.

판결선고 2022. 11.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19가단1359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218,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5569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30489 판결).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형, 판사 이상아, 판사 조성필